

고성군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0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2. 18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2. 12. 1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2. 12. 26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사유

-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강화(안 제12조제2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건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 시행해 오던 고성군주차장조례를 차량증가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중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우리지역에서 증가하는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능 절차를 거쳐 개정하고자 함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강화되는 설치기준이 우리지역 여건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을 들은후 깊이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별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수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답 : 기존 건축물이 아니라 앞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를 규정하는 것임.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2. 12.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